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05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박상혁 · 이용우 · 이강일
이연희 · 김주영 · 이해식
허영 · 조승래 · 박민규
노종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그러나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6조제2항 등).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제2항 본문 중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를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86조제2항에 따라 진술을 갈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서면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1항의 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6조제2항 및 제4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 (생략) ② 제492조의 경우에는 <u>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u> ③ (생략)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생략)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u>----- -----<u>. <단서 삭제></u> ③ (현행과 같음)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 ----- ----- ----- ----- ----- -----<u>. 다만, 제486조제2항에 따라 진술을 같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현행과 같음)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생략) <u><신 설></u>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서면 또는 「민사소송 등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1 항의 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	---